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청 소 년 보 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광·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등 청소년의 취업 준비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숙박업의 범위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로 다양한 신원확인 방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을 보완하는 한편,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매체물 심의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 제15913호, 2018. 12. 11. 공포, 2018. 12. 11.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개선(안 제6조제1항제1호 개정)

청소년의 교육훈련·실습을 위해 현장실습계약이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광진흥법 등을 적용받는 숙박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

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보완(안 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다른 법률에 따라 신원이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추가

다.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7조제1항제4호, 안 제25조제1항,

제2항, 제3항, 안 제26조제1항, 별표 9 개정)

청소년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라.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등 보완(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
촉할 수 있도록 하여 매체물 심의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단서를 “다만, 다음 각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다음 각목을 신설한다.

-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 나.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 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 라. 가목을 제외한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중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이 동법 제9조제1항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거나, 「산업현장의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근로자가 동법 제21조에 따라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7조제1항제4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른 법률에 따라 신원이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25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4항”을 “법 제2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법 제28조제6항”을 각각 “법 제28조제7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9항”을 “법 제28조제10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를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제외한 24세 이하의 사람(이하 “청소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청소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 중 “법 제28조제6항”을 “법 제2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법 제28조제6항”을 “법 제28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8호 중 “법 제28조제4항”을 “법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	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	
위) ①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하는 영업을 말한다.		-----.		
1.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		1. ---. 다만, 다음 각목은 제외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한다.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				
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				
한다.				
<신 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신 설>		나.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신 설>		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신 설>		라. 가목을 제외한 「관광진흥		
		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또는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2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 6. (생략)	<u>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중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이 동법 제9조제1항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거나, 「산업현장의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근로자가 동법 제21조에 따라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u>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의2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 6. (현행과 같음)
--	--

7. <신 설>

② (생 략)

제25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
년유해표시)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
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청소
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별표 7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
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
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③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
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
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7. 다른 법률에 따라 신원이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
년유해표시) ① 법 제28조제5항

-----.

② 법 제28조제7항-----

-----.
-----.

③ -----

법 제28조제7항-----

-----.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
① 법 제28조제9항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약물등은 법 제2조제4호나목1)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한다.	① 법 제28조제10항-----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이하 "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매체물별로 둘 수 있다.	제34조(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매체물 또는 청소년 분야에 관하여 <u>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u>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 ----- ----- <u>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제외한 24세 이하의 사람</u> (이하 "청소년위원"이라 한다.) <u>중에서</u> ----- -----.
④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서 신설>	④ ----- ----- <u>.다만, 청소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u>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시정명령의 종류(제39조제2항 관련)

의무내용	시정명령의 종류
1. 법 제13조(법 제28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 표시의무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2. 법 제14조(법 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 포장의무	포장명령, 포장방법 변경명령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진열 금지의무	전시·진열 금지명령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진열 금지 의무	전시·진열 금지명령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격리 의무	구분·격리 명령
6.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기 판매를 위한 전시·진열 금지의무	전시·진열 금지명령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광고선전물의 설치·부착·배포 금지의무	설치광고선전물 철거명령, 부착광고선전물 제거명령, 배포광고선전물 회수명령
8.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 금지내용 표시의무	표시부착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9.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출입·고용제한 표시의무	표시부착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의안 소관 부서명 〉

청소년보호환경과	
연 락 처	02-2100-6292